

● 2026-02-11 ●

율촌 입법 위클리

Yulchon Weekly Legislation Report

2026-02호 (2026년 2월 11일)

최근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심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제3차 상법 개정안」, 한미간 통상 이슈의 중심에 있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 투자특별법)」 그리고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설탕부담금」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입법 동향을 정리 합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를 개회하고 「제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기존의 자사주 활용을 통한 경영권 방어 전략 또는 지배구조 개편 전략 등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각 의무의 예외 사유와 유예 기간 등에 대해 여야 및 정부 부처 간의 세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한 시점입니다.

또한, 대미 투자 이행을 둘러싼 한미 간 통상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쟁점 사항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월 말 또는 3월 초 입법 가능성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당 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과 해외의 긍정적 도입 사례를 참조로 하는 만큼 후속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식음료 업계와 관련 유통 업계의 영업 및 마케팅 전략에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Focus 1.

「3차 상법 개정안」관련 법사위 소위 주요 논의사항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를 개최하고, 취득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의무 부여,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명확화, 자기주식 처분절차 구체화 등의 쟁점에 대해 법무부, 법원행정처, 국회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소위의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추가 공청회 개최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며, 예외적인 사유(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승인 등을 통해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모두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편법 활용되는 것을 막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 소각 의무화, 예외적 보유 허용'이라는 방향성에 동의하였습니다.

특히 합병 등 '특정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소각 시 복잡한 자본금 감소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간소하게 소각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제도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강조되었으며,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의견수렴 및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반면 김재섭 위원은 "원칙적으로 자사주 소각이 맞다"며 제도 도입 찬성 입장을 명확히 하고, 다만 부작용 방지를 위해 '특정 목적' 취득분에 대한 예외 적용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관련 공청회는 2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사주의 법적 지위 정의

법원행정처는 자사주의 경제적 실질과 회계 처리를 고려하여, '미발행 주식'으로 규정하는 입법 정책 방향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사주를 '미발행 주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애초에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권리 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여 지배력을 강화하는 소위 '자사주 마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리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러한 방향에 대한 반론은 없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한 주식 등에 대해서 보유 주체가 변경된 경우까지 의결권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분 절차 규제

개정안은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경영상 목적 달성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3자 처분이 가능하며, 이는 신주 발행(제3자 배정) 절차와 동일하게 규제하여 기존 주주의 희석화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처분(예: 5% 미만)에 대해서까지 엄격한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는 '경영상 목적' 등의 사유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예외 사유와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유예 기간

법무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기존 보유 자사주는 2027년 주주총회까지 소각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국회회의록] 제432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02.03)

[바로가기](#)

Focus 2.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양당간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관련 입법 일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월 26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한미간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상호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총 8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별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의결일자로부터 1개월 한정입니다.

양당간 법률안에는 비준동의, 국회 사전 동의 범위, 기금 운용 방식, 감독 체계 등에 대한 의견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 당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하면서 법률안의 주요 이슈 중 비준동의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경제6단체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등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2월말 또는 3월 초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률안 발의 목록

2214555 / 2025-11-2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병기의원 등 20인)	2215548 / 2025-12-2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2214959 / 2025-1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홍기원의원 등 20인)	2216352 / 2026-01-2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2215180 / 2025-12-1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2216594 / 2026-0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2215497 / 2025-12-2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2216596 / 2026-0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건의원 등 11인)

□ 주요 쟁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214555 김병기의원안)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215497 박성훈의원안)
비준 동의	MOU이므로 국회 비준 불필요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필수
접근 방식	특별법으로 신속 처리	국회 사전 동의 절차 강화
주요 우려	관세 소급 적용 시급	재정 부담, '묻지마 투자' 방지

[경향신문]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국힘, 비준 동의 주장 유보

[바로가기](#)

[한국경제인협회]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대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바로가기](#)

Focus 3.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

「설탕부담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이재명 대통령이 가당식품·음료에 대한설탕부담금 도입 의견을 제시한 이후, 조국혁신당 김선민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월 12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설탕의 과다 섭취가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며 가당음료에 대한 과세 등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다수의 국가에서 이른바 '설탕세' 또는 '가당음료세' 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비만, 아동천식,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등의 질병 및 의료비 감소 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 정책은 국민건강증진과 함께 공공의료 재원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 및 서민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221647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바로가기](#)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함

첨가당 함량에 따른 부담금 부과 기준(가당음료 100밀리리터 당)

5g 이상 8g 미만

1리터 당 225원

8g 이상

1리터 당 300 원

[22165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바로가기](#)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첨가당 함량에 따른 부담금 부과 기준(가당음료 100리터 당)

1kg 이하	1,000원	10kg 초과 13kg 이하	11,000원
1kg 초과 3kg 이하	2,000원	13kg 초과 16kg 이하	15,000원
3kg 초과 5kg 이하	3,500원	16kg 초과 20kg 이하	20,000원
5kg 초과 7kg 이하	5,500원	20kg 초과	28,000원
7kg 초과 10kg 이하	8,000원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긴급토론회 (김선민 의원실)

- 2026년 2월 10일 (화) 14:30 /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토론회 (정태호 의원실)

- 2026년 2월 12일 (목) 10:00 / 국회도서관 소강당

[국회입법조사처] 설탕세(Sugar Tax) 과세 동향과 시사점 [바로가기](#)

● 입법 전략·대응팀 ●

기업의 규제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규제 및 입법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 전략·대응팀은 이러한 기업의 규제 및 입법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지자체의 조례, 관계부처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해석과 제개정, 사안별 적용 여부 분석과 함께 개별 부처 또는 유권해석 기관 응대를 통한 규제 대응 방안, 국회 국정감사등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제안해 드립니다.

또한 상시적인 입법·정책·규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별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전문 입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 전략·대응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의 고위 관료 출신 변호사와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 및 입법 대응 전문팀으로, 풍부한 네트워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별 최적의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변호사

02-528-5219
dskim@yulchon.com

이강민 변호사

02-528-5127
kmlee@yulchon.com

박지웅 변호사

02-528-5190
jwpark@yulchon.com

장재형 세무사

02-528-5392
jhjang@yulchon.com

구기성 고문

02-528-5168
kskoo@yulchon.com

최용선 수석 전문위원

02-528-5100
yongsunchoi@yulchon.com

김동석 수석 전문위원

02-528-5824
dongsukkim@yulchon.com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

02-528-5806
junyoungchoi@yulchon.com

윤여훈 전문위원

02-528-5271
summeryoon@yulchon.com

김한규 전문위원

02-528-6124
hgkim@yulchon.com